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5
----------	------

제출년월일 : 2002년 5월 1일

발 의 자 : 장윤영 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인구 6천 이상의 동은 별도의 선거구를 갖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 우리시 의원 정수가 1인이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코자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설치 중 “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 행정경제위원회 13인 이내, 사회복지위원회 13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3인 이내 ”를
“의회운영위원회 8인 이내, 자치행정위원회 10인 이내, 경제환경위원회 10인 이내, 사회복지위원회 10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0인 이내“로 함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 상임위원회 소관 중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함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3. 관련근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8인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10인 이내
3. 경제환경위원회 10인 이내
4. 사회복지위원회 10인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10인 이내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사업소 중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국, 직속기관 중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중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 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 직속기관 중 성남시수정보건소, 성남시중원보건소, 성남시분당보건소, 사업소 중 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성남시영생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생략) 1. <u>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u> 2. <u>행정경제위원회 13인 이내</u> (신 설) 3. <u>사회복지위원회 13인 이내</u> 4. <u>도시건설위원회 13인 이내</u>	제2조 (현행과 같음) 1. <u>의회운영위원회 8인 이내</u> 2. <u>자치행정위원회 10인 이내</u> 3. <u>경제환경위원회 10인 이내</u> 4. <u>사회복지위원회 10인 이내</u> 5. <u>도시건설위원회 10인 이내</u>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행정경제위원회</u> <u>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u> <u>행정국, 경제통상국, 직속기관 중</u> <u>성남시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중</u> <u>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에</u> <u>속하는 사항</u> (신 설) 3. <u>사회복지위원회</u> <u>문화복지국, 직속 기관중 성남시</u> <u>수정보건소, 성남시중원보건소,</u> <u>성남시분당보건소, 사업소 중</u> <u>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 성남시</u> <u>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성남시</u> <u>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중앙문화</u> <u>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 4. <u>도시건설위원회</u> <u>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u> <u>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 성남시</u> <u>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u> <u>사항</u>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자치행정위원회</u> <u>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u> <u>행정국, 사업소 중 성남시중앙</u> <u>문화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경제환경위원회</u> <u>경제통상국, 직속기관 중</u> <u>성남시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중</u> <u>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 성남시환경</u> <u>녹지사업소,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u> <u>소관에 속하는 사항</u> 4. <u>사회복지위원회</u> <u>문화복지국, 직속기관 중 성남시</u> <u>수정보건소, 성남시중원보건소,</u> <u>성남시분당보건소, 사업소 중</u> <u>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u> <u>성남시영생관리사무소 소관에</u> <u>속하는 사항</u> 5. <u>도시건설위원회</u> <u>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u> <u>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u> <u>사항</u>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6
----------	------

제출년월일 : 2002년 5월 1일

발 의 자 : 장윤영 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인구 6천 이상의 동은 별도의 선거구를 갖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 우리시 의원 정수가 1인이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코자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직인의 종류 중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을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으로함 (안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내지 마목)

3. 관련자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성남시조례 제 호

성 남 시 의 회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 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 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제4조 별표 제3호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 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 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종류)①(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u>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u> (신설) 다. <u>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u> 라. <u>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u>	제2조(종류)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u> 다. <u>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u> 라. <u>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u> 마. <u>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u>
제4조 별표 1. (생략)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u>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u> (신설) 다. <u>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u> 마. <u>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u>	제4조 별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u> 다. <u>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u> 라. <u>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u> 마. <u>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u>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2년 3월 7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

◎법률 제6663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법제8조의3제4항 신설).

나. 종전에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제1항).

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법 제23조제1항 단서).

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에서 17일로 연장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과 동일하게 함(법 제33조제1항).

마. 시·도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정당법에 따라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거부사유로 규정함과 동시에 후보자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법 제47조제3항 신설,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9조제10항 및 제12항).

사.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아.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정함(법 제57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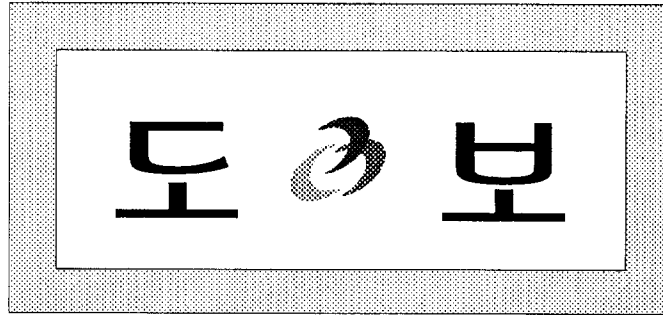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하여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현수막제작비용·전화홍보비용 및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신설).

차.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법 제146조제2항 후단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036 호
2002년 4월 27일(토)

차 례

조 례

- 경기도조례 제3184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

경기도의회 제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창 열 인
2002년 4월 27일

경기도조례 제3184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과		자 치 행 정 과
입 안 자	실·과 장	지방서기관 이 한 대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방행정사무관 김 수 만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한 기 영(249-4083)

회 람								
--------	--	--	--	--	--	--	--	--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 기 도 보

제 3036 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되었고
- 그동안 선거구의 인구변동, 행정구역 변경, 읍면동의 명칭변경등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현행 읍면동마다 1인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원 정수를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토록함
- 나.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시군은 그 정수를 7인으로 함
- 다. 분동에 따라 선거구를 증설하고 의원정수를 증원함
- 라. 군에서 시로 승격한 화성시, 광주시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함
- 마.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지역의 선거구 명칭을 변경함

경 기 도 보

제 3036 호

城南市	城南市	城南市	
城南市	41		
新興1洞 選舉區	1	新興1洞 一圓	
新興2洞 選舉區	1	新興2洞 一圓	
新興3洞 選舉區	1	新興3洞 一圓	
太平1洞 選舉區	1	太平1洞 一圓	
太平2洞 選舉區	1	太平2洞 一圓	
太平3洞 選舉區	1	太平3洞 一圓	
太平4洞 選舉區	1	太平4洞 一圓	
壽進1洞 選舉區	1	壽進1洞 一圓	
壽進2洞 選舉區	1	壽進2洞 一圓	
丹垚洞 選舉區	1	丹垚洞 一圓	
山城洞 選舉區	1	山城洞 一圓	
陽地洞 選舉區	1	陽地洞 一圓	
福井洞 選舉區	1	福井洞 一圓	
新村洞 高登洞 始興洞 選舉區	1	新村洞 高登洞, 始興洞 一圓	
城南洞 選舉區	1	城南洞 一圓	
中洞 選舉區	1	中洞 一圓	
金光1洞 選舉區	1	金光1洞 一圓	
金光2洞 選舉區	1	金光2洞 一圓	

경 기 도 보

제 3036 호

選 舉 區 名	議員定數	選舉區域	備 考
銀杏1洞 選舉區	1	銀杏1洞 一圓	
銀杏2洞 選舉區	1	銀杏2洞 一圓	
上大院1洞 選舉區	1	上大院1洞 一圓	
上大院2洞 選舉區	1	上大院2洞 一圓	
上大院3洞 選舉區	1	上大院3洞 一圓	
下大院洞 選舉區	1	下大院洞 一圓	
盆唐洞 選舉區	1	盆唐洞 一圓	
蘆內1洞 選舉區	1	蘆內1洞 一圓	
蘆內2洞 選舉區	1	蘆內2洞 一圓	
蘆內3洞 選舉區	1	蘆內3洞 一圓	
亭子1洞 選舉區	1	亭子1洞 一圓	
亭子2洞 選舉區	1	亭子2洞 一圓	
亭子3洞 選舉區	1	亭子3洞 一圓	
書峴1洞 選舉區	1	書峴1洞 一圓	
書峴2洞 選舉區	1	書峴2洞 一圓	
二梅1洞 選舉區	1	二梅1洞 一圓	
二梅2洞 選舉區	1	二梅2洞 一圓	
野塔1洞 選舉區	1	野塔1洞 一圓	
野塔2洞 選舉區	1	野塔2洞 一圓	
野塔3洞 選舉區	1	野塔3洞 一圓	
板橋洞 雲中洞 選舉區	1	板橋洞 雲中洞 一圓	
金谷洞 選舉區	1	金谷洞 一圓	
九美洞 選舉區	1	九美洞 一圓	